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1252호

다. 발의일자 : 2020. 2. 3

라. 회부일자 : 2020. 2. 4

### 2. 제 안 사 유

- 서울시 수도사업은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 14조제1항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해야할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용요금(10m<sup>3</sup>/월), 소방용수 구경별기본요금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액을 일반회계 등에서 보전 받지 못하고 있어 상수도 세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수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 되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3. 주 요 내 용

- 가.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 4. 참 고 사 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나. 예산 조치 :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수도요금 감면 현황

-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8개 대상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음.

<분야별 수도요금 감면 현황 및 시행시기(2020.1월 기준)>

연번	감 면 대 상	감 면 내 용			시행시기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구경별기본요금 전액			'01.9월
		각 요금별로 세대당 월 10m <sup>3</sup> 까지			'12.3월
2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각 요금별로 월 사용량의 20%			'88.10월
3	소방용수 시설	기본요금 전액	-	-	'00.8월
4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각 요금별 월 화장실 이용인원 × 9/1,000m <sup>3</sup> 감면			'05.12월
5	독립유공자	각 요금별로 세대당 월 10m <sup>3</sup> 까지			'20.1월
6	자가검침 수용가	납기별 600원/회			'03.3월
7	전자고지 수용가	부과금액의 1%	없 음	없 음	'05.12월
8	아리수음수대 설치 초·중·고등학교	사용량의 20%	없 음	사용량의 20%	'09.2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 확대  
: 구경별기본요금 → 세대당 월 10m<sup>3</sup>(’12년 3월)

-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직영기업으로서 수도물 생산·공급이 설치목적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기업목적 이외의 경비인 수도요금 감면은 해당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도록 법률상 규정<sup>1)</sup>되어 있음.

이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소방용수 시설,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독립유공자는 일반회계 보전 감면 대상으로,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수용가, 아리수음수대 설치 초·중·고등학교는 공기업목적에 따른 자체 감면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은 법률에 규정된 강행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3개 대상<sup>2)</sup>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sup>3)</sup>으로 2019년 12월말 기준 일반회계 미보전액은 1,098억 5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수도요금 감면액 일반회계 미보전 현황(2019.12월말 기준)>

구 분	계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소방용수 시 설 <sup>4)</sup>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금액(백만원)	109,805	41,918	1,940	59,227	19	6,701
비 고	-	미보전	미보전	미보전	보전	감면 중단

※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은 2011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납부로 보전

※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은 한시 감면 조항으로 2011.1월 이후 감면 중단

1) 「지방공기업법」 제1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

2) '11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납부로 보전 중인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제외

3) '09년 이후 일반회계에서 미보전 되고 있음

4) 「수도법」 제45조,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소화전을 설치·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체이므로,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감면 금액은 수도사업자(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2) 수도요금 현실화율

- 2018년 기준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9.48%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등 상수도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바, 노후 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적기 시설투자 등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인상, 자산관리 및 경영효율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수도요금 현실화율>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톤당원가(원)	673.03	697.24	702.54	713.22
톤당요금(원)	568.85	569.62	566.94	566.89
수도요금 현실화율(%)	84.52	81.70	80.70	79.48
수도요금 인상요인(%)	18.31	22.41	23.92	25.81

- 상수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반회계 보전을 위한 예산편성을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 보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3) 일반회계 미보전시 수도요금 감면 중단 관련(안 제31조제1항)

- 안 제31조제1항은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강행규정을 따르고 상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더불어 현재 일반회계 보전 중인 대상에 대한 중단 없는 보전 이행, 향후 수도요금 감면 요구 확대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시 예산담당관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 사이 수입 보전과 같은 회계간 예산 전출입 관련 사항은 집행부 내부 협의 가능 사항”이라며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바, 이 상태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sup>5)</sup>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 복지정책에 따라 시행 중인 수도요금 감면금액 중 미보전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협의(요청)해야 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현재 보전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감면 대상 확대 요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반회계 보전이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5) 감면 중단으로 대상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뢰를 저해할 여지가 있음